에티오피아의 사법체계

박 재 형
(한국법제연구원)

[특집 VI]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초법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특집을 편성하였습니다.

Ⅰ. 서 론

Ⅱ. 에티오피아 사법체계의 특징

1. 사법의 독립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3. 전통적 사법체계와 현대적 사법체계의 혼재

Ⅲ. 에티오피아의 사법기관

1. 연방법원
2. 주 법원
3. 사회법원
4. 도시지방법원
5. 그 외의 법원
6. 헌법심의위원회
7. 사법행정위원회

Ⅳ. 법조인

1. 재판관
2. 검 사
3. 변호사

Ⅴ. 결 론

Ⅰ. 서 론

에티오피아는 연방제로서 헌법을 통하여 사법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연방법원과 주 법원, 지방법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외의 법원으로서는 사회법원과 종교/관습법원이 존재한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붕괴 이후 1995년 헌법제정을 거쳐 분권화된 국가가 성립되면서 정립된 사법체계로서, 분권화에 따라 최근까지 에티오피아 전국 각지에 많은 법원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달리 법제가 세밀히 정비되지 못한 관계로 연방과 주 사이의 사법체계상 갈등이 존재하며, 법조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법원의 수에 비하여 구성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사법권의 부족한 독립성, 전통 법률체계과 현재 법률체계의 혼재 등으로 오는 사법체계의 혼란은 아직 에티오피아가 풀어야 할 문제이다.

Ⅱ. 에티오피아 사법체계의 특징

1. 사법의 독립

1995년 헌법은 에티오피아에서의 사법권의 독립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또한 어느 법원도 정부기관, 정부관료 그 외의 모든 조직의 영향 또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사법권의 독립을 구체화하고 있으며(Article 79.2.), 재판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실시하고, 오로지 법률에 의하여만 지배된다고 규정한다(Article 79.3.).

그러나 이러한 독립의 선언만으로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정부나 기타 외부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에서의 체제상 헌법에 명시된 독립과 균형이념의 발전은 어렵다. 에티오피아에서 중앙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집행부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었던 역사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현재의 약한 사법부를 만들었으며, 평등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사법부를 인정하여야 하는 다른 조직 역시 이를 묵과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인종과 국가간의 충돌은 분권화와 연방주의 실행을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각에서는 사법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 파벌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역사적으로 행정과 사법이 결합되어 개혁을 실행할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 몇몇 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현재 이와 같은 사법의 독립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에티오피아 국민은 모두 사법상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나 사법권을 가진 단체로부터 재판을 받고 판결을 구할 권리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면 기소된 사람은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공개재판을 적정기간 내에 받을 권리, 무죄의 추정을 받을 권리, 자신의 선택하는 변호사에 의해 대리될 권리,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소송을 하는 경우 당국은 기소된 자에게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구류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그 범위에 대하여, 특히 SPO 재판에 관하여는 여전히 어렵게 제한되고 있다.

3. 전통적 사법체계와 현대적 사법체계의 혼재

에티오피아는 기본적으로 다원적인 법률체계를 가진다. 즉 과거 종교나 관습에 의하여 생긴 법원이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헌법으로도 이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성문화된 형식적 사법체계 역시 가장 기본적인 사법집행 수단으로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인 체계는 원칙적으로 서로 병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관습 및 전통법원의 규율이 헌법이 명시하는 권리와 상당한 충돌을 보이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의 현재 개혁노력에는 전통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학자들은 헌법상의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로 종교나 관습법원을 강화한다면, 국가에 형식적인 사법체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통법원이 더 빠르며, 경제적이고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형식적인 사법체계상의 법원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이를 현재 체계하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통적인 체계와 현재의 형식적 체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에티오피아의 사법기관

1. 연방법원

(1) 개 요

1995년 에티오피아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선언하고 법원의 구조 그리고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방법원(Federal Courts)은 Proclamation 25/1996에 의해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연방최고법원, 연방고등법원 및 연방1심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법원들은 연방법률하에 발생하는 사건들과 그 외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각각 독자적인 관할을 가지고 있다. 연방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법원으로 인식되며, 연방법원의 구성원은 Addis Ababa에 거주하는 지역특권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구 성

각 법원의 관할사건은 민사, 형사 그리고 노동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마다 1인의 재판장과 2인의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연방최고법원은 1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ddis Ababa에 위치하고 있다. 연방고등법원과 연방1심법원은 Addis Ababa와 Dire Dawa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방고등법원의 경우 약 35명, 연방1심법원은 약 5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방고등법원의 경우 에티오피아의 5개 주에만 설립되어 있는데, 5개의 주에만 설치된 이유는 에티오피아의 주 사법체계에 내재하는 문제점에 기인한다. 연방에 의해 운영되는 주법원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덜 안정되어 있는 지구 내의 안정성 강화, 그리고 통제의 유지이다. 연방최고법원, 연방고등법원, 연방1심법원은 효과적으로 정의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주 내 혹은 관할권에 존재하는 지역 내 어느 장소에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

(3) 관 할

연방법원은 헌법, 연방법, 국제조약 그리고 연방법에서 규정된 특정당사자 및 장소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연방법원은 주요한 형사문제나 특별한 유형의 민사문제에 대하여도 관할한다. 연방법원은 연방법과 국제조약을 적용하며, 연방법과 국제법과의 충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 법을 적용한다. 헌법해석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헌법심의위원회(Council of Constitutional Inquiry)에 맡겨야 한다.

(4) 역 할

연방최고법원은 에티오피아에서 연방관련 문제에 대하여 최고 · 최종적인 사법권을 가지는 법원이다(Article 84.1). 하급연방법원 및 주최고법원에 의해 결정된 판결을 검토하고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Article 80. 3. a)). 그러나 사실상 연방법과 주법의 구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법원은 연방최고법원의 결정 중 주법원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하여 종종 불복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아직 사법권 내에서의 권한배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주의 경우 연방법원의 파기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당해 주법원이 따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연방법원의 사법상 결정은 선례가 되지 않으며, 하급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이 자신의 권한으로서 종종 선례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자신들이 결정한 선례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상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사법체계가 다수항소체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주 법원

에티오피아 헌법은 주 법원(State Courts)을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즉 주 최고법원, 고등법원, 1심법원으로 나뉜다. 주 최고법원은 수도인 Addis Ababa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법과 관할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최종판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 법의 중요한 흠결을 검토하고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연방고등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주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Article 80.2.). 주 고등법원은 각 지역에 있으며, 자신의 관할권 외에 연방1심법원의 관할권 내에서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1심법원의 관할권 내에서 이루어진 주 고등법원의 결정은 주 최고법원에서 상소할 수 있으며(Article 80.5.), 연방문제에 대하여 주 최고법원이 내린 결정은 연방최고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Article 80.6.). 현재 연방법원은 주 법원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주법원은 가능한 한 많은 연방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사회법원

헌법상 명시된 바는 없지만, 에티오피아의 어떤 주에서는 규모가 작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법원(Social Courts 또는 Kebele Courts)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법원은 주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공식적인 사법체계의 한 부분이다. 몇몇 주 법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첫 번째로 사회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항소는 1심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법원의 판사는 비전문가로서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선거나 임명을 통하여 선출된다. 이는 사회법원이 설치된 에티오피아 주에서 가장 대중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해당 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4. 도시지방법원

Addis Ababa 도시헌장은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2가지 유형의 도시지방법원(Municipal District Courts)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항소법원 내에 하급심을 파기할 수 있는 판사가 있으나, 도시헌장에 의해 도시 내에 최고법원을 두지 않는다. 항소법원의 파기결정은 연방법원의 결정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도시법원와 연방법원 간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 결정은 연방법원에서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법원은 연방법원체계가 존재하는 전통적 체계 밖에 있는 새로운 젊은 법률가로 구성된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가 집단은 매우 활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개혁적이며, 자치제가 직면하는 특정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수의 실질적인 접근을 이루어 왔다.

Addis Ababa 도시헌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형사문제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금액이 5,000Birr(약 ₩630,000) 이하인 민사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법원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사회법원의 결정은 1심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또한 도시헌장은 노사관계위원회, 행정사무재판소, 세무심사위원회 및 도시토지정리심사위원회 등에게도 사법권을 부여한다.

에티오피아의 또 다른 주요 도시인 Dire Dawa는 아직 Addis Ababa와 같은 독립된 도시법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비록 도시 외 지역에서 사회법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들의 사법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며 항소법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5. 그 외의 법원

(1) 개 요

에티오피아의 헌법은 종교와 관습법에 따라 모든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개인과 가족 사정에 관하여 분쟁의 재판을 허용하며, 헌법에 따른 공식적인 승인에 의하여 종교 및 관습법원이 설립될 수 있다(Article 78.5.). 이론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법률체계와 형식적인 법률체계는 병존하는 것으로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법률체계는 공식적인 법률체계와 사법권 및 법률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두 법률체계간의 심각한 마찰이 발생하는 지역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관습상의 정의는 각각 다른 지역색과 지역전통에 근거하며, 성문화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의 형식적 사법체계하에서는 종교 및 관습법원을 위하여 고안된 형식적인 항소절차도 존재하지 않으며, 인민의회의 대표나 연방 · 주의 파기판사에게 헌법상의 문제로서 주장하여야만 항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에티오피아의 법률문제는 형식적 사법체계 외의 부분에서 광대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종교법원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Sharia 법원이 주, 지방, 도시지방에 설립된 유일한 공식적인 종교법원이다. Sharia 법원은 오직 이슬람법을 적용하며, 이슬람교에 관한 종교사안 또는 가족에 관한 사안을 심리한다. 자체적인 항소체계를 가지며, 분쟁의 당사자는 종교법원의 사안심리에 무조건 동의하여야 한다. 물론 종교법원의 결정은 사법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 이러한 종교법원을 적극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나 종교법원은 일반적인 법원규칙에 따라야 하며, 연방사법행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받는다.

(3) 관습법원

관습법원은 헌법상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에 의하여 많이 설립되지 않는 실정이다. 관습법원은 사회법원과 달리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정만 되고 있다. 이 법원의 권위는 지방의 전통이나 관습으로부터 생기며, 과거 전통적인 중재위원회 또는 더 오래된 의회로부터 진화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사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에티오피아 전역에 걸쳐 지방의 주요 결정권자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공

식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당사자가 종종 이 법원에 분쟁해결을 요구한다.

6. 헌법심의위원회

(1) 구 성

헌법심의위원회(Council of Constitutional Inquiry)는 헌법상의 문제에 대해 조사 · 심의할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헌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방최고법원의 법원장이 된다(Article 82.2.(a)). 연방최고법원의 부법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며(Article 82.2.(b)), 법률에 대한 전문적 능력과 도덕적 위상이 증명된 6인의 전문가를 인민의회의 대표의 추천을 통해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임명한다(Article 82.2.(c)). 나머지는 연방의회에 의하여 연방의회 구성원 중 3인으로 이루어진다(Article 82.2.(d)). 위원회는 그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Article 82.3.).

(2) 역 할

역할과 관련하여 헌법심의위원회는 위원회장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 · 심의하여 연방의회에 이에 대해 결정된 제안안을 제출한다(Article 84.1.). 연방의회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면 위원회의 결정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연방법이나 주 법이 헌법상 위반이 되는지에 관한 논란에 대해 법원이나 당사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조사요구에 대하여도 결정된 제안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방의회의 확인을 거쳐 최종결정사항으로 사법상 효력이 생긴다(Article 84.2.).

그리고 위원회는 법원에서 헌법해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헌법상 규정에 따라 특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법원에서 심리 도중 헌법해석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는 헌법상 해석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법원에 사안을 송환하여야 한다(Article 84.3.(a)). 만약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연방의회에 직접 상소할 수 있다(Article 84.3.(b)). 이와 달리 위원회가 헌법상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 · 심리로 결정된 결과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에 관한 규칙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방의회의 승인에 의해 규칙을 실

행할 수 있다(Article 84.4.). 연방의회는 위원회로부터의 제안안을 받은 후 30일 안에 결정하여야 한다(Article 83.2.).

7. 사법행정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연방, 주, 도시지방 등 모든 정부 수준에서 입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일반적으로 이 위원회는 사법권을 가지는 않지만, 재판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후보의 추천, 징계 및 윤리기준의 정립, 징계사항 조사, 보직이동에 관한 결정, 급여, 승진, 정직, 의료혜택, 부서배치, 재판관의 이동 등의 업무에 대한 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연방에서 위원회는 사법부과 의회의 직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관 6인과 인민의회 대표 3인, 즉 9인으로 구성되며, 그 이하 단위의 지방정부에서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대표들이 대등하게 혼합되어 위원회를 구성한다.

Ⅳ. 법조인

1. 재판관

(1) 1995년 헌법과 재판관의 임용

1995년 헌법제정 이전 군사독재시대에 신임 판사의 교육은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3인의 선배 판사들에 의하여 멘토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당시 대부분의 판사 및 법률가는 유능한 특권계층인 동시에 군사독재정권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훗날 Derg 정권 타도 당시, 법률가와 판사는 보복의 표적이 되기도 하여, 대부분의 경험 있는 판사들은 살해당하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1995년 헌법의 제정에 의하여 분권화된 새로운 연방/주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많은 법원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판사의 대한 수요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률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는 수요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결국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새로운 체계하에서 기존 체제에 속하지 않았던 젊은 판사를 적극 고용하였다. 결국 많은 판사직이 법률 교육과 경험만을 자격으로 하여 채용되었으며, 법률 교육을 개방하였고, 이러한 점은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직업의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2) 자 격

현재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떠한 수준의 법원(연방, 주, 지방 등)에서도 재판관에게 법학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헌법에 충성하고, ② 법률교육 또는 경험을 통해 적절한 사법실무를 배운 자, ③ 근면함, 공정함, 바른 행동거지로 인한 좋은 평판을 얻는 자, ④ 판사직을 수락한 자, ⑤ 25세 이상의 자인 에티오피아인이라면 누구든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최고수준의 법원인 연방법원은 보다 교육을 잘 받고, 경험 많은 자를 재판관으로 채용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로 최근 법대를 졸업한 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자가 종종 채용된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로서, 연륜 있는 재판관들의 부재가 교육담당판사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특히 지방단위의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사법결정의 질과 임명자의 자질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 중의 하나가 에티오피아 공무원대학(Ethiopia Civil Service College)의 설립증가로서, 종교와 인종에 상관없이 에티오피아에 사는 누구라고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법조인이 양산된 것이다. 이러한 자질 없는 재판관의 양성은 실제 형사문제 있어서 피고의 형량을 과중하게 부과한다든지, 연방법원의 경우 부당하게 사형을 선고한다든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3) 임명절차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연방최고법원의 법원장 및 부법원장은 총리의 지명으로 인민의회가 임명하며(Article 81.1.), 다른 연방재판관들은 연방사법행정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후보자안을 총리가 인민의회에 제출하고, 인민의회는 이 중에서 연방재판관을 임명한다(Article 81.2.). 주 체계는 연방의 체계와 많은 부분 흡사한데, 주 최고법원의 법원장과 부법원장은 해당 주의 CEO에 의하여 지명되며, 주의회에서 임명한다(Article 81.3.). 주 최고법원 및 주 고등법원의 재판관은 주 사법행정위원회의 지명으로 주의회에서 임명한다. 여기서 주 사법행정위원회는 주의회에 후보자안을 제출하기 전에, 추천 등에 대한 연방사법행정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연방사법행정위원회가 3개월 내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주의회는 임명을 승인한다(Article 81.4.). 그 외 주 1심법원의 재판관은 연방사법행정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주 사법행정위원회의 지명으로 주 의회가 임명한다(Article 81.5.).

(4) 정년 및 해임

현재 에티오피아의 재판관의 정년은 60세이며, 이 이상으로 정년을 임의로 변

경할 수 없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자신의 정년 전까지는 해임되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업무상 심각한 비능률 혹은 무능력의 경우, 판사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힘들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Article 81.4.(a)~(b)). 이와 같은 결정은 사법행정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불복 방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 검 사

(1) 임 명

에티오피아 헌법은 검사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방검사에 대한 행정법률로서 검사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임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에티오피아 국민이어야 한다.
② 에티오피아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인정된 대학으로부터 법률학위나 자격을 얻어 졸업하여야 한다.
④ 근면하고, 충성스러우며, 모범적인 도덕적 성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⑤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관은 검사의 충원을 위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하고, 이 공지에는 현재 검사직이 공석임을 명시하고, 검사에 요구되는 자격 및 업무능력, 급여, 그 외 필요한 정보 등을 명시한다. 지원자들은 서면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장관은 지원자들 중에서 시험을 통하여 검사를 선발한다.

(2) 의 무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정부 및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 외적에서의 행동도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나 직업의 존엄을 지키도록 어떠한 일이라도 수행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복종의무를 두고 있어 상관의 명령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따라야 하며, 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밀 혹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검사는 다른 이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업상 특성을 이용한 금전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3. 변호사

(1) 교육 및 자격

에티오피아의 대표적인 법률교육기관으로는 1963년에 설립된 Addis Ababa 대학(AAU)이 있다. AAU 현재 에티오피아의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서, 1년에 평균 40~60명의 법률가를 배출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에티오피아 공무원대학(The Ethiopian Civil Service College)이 있으며, 이 대학은 정부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서 1995년에 설립되었다. 하나의 특징으로는 종교 및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입학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 공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늘날 약 600명의 법률가가 공무원대학을 졸업하였으며, 6개월의 법률전문가 및 자격증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법률가가 배출되고 있다.

일단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AAU나 공무원대학 등의 로스쿨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별도의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판사나 검사 등으로 5년 동안 공공분야에 종사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2) 변호사협회

위의 절차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었다면 변호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자발적인 신청으로 인해 가입되는 단체이므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다. 변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국민 6,500만 명 중 약 800~9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다고 하며, 현재 변호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의 수는 약 440명 정도이다. 변호사협회는 법률원조사업, 단기법학교육, 법률개정, 법률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는 정부의 견제와 더불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호사협회로서 에티오피아 여성변호사협회(The Ethiopian Women Lawyers Association)라는 자원단체가 존재한다. 여성변호사협의의 본사는 Addis Ababa에 있고, 80명의 여성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주의 지원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6개 지점 및 60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다. 여성변호사협회는 여성을 위한 법률원조를 제공하고 법률개정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맡는다.

(3) 기 타

소송승소시 변호사에게 성사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에 의하

여 낮은 백분율로서만 인정된다. 징계에 대하여는 다른 법조인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위원회에 의하여 형식적인 징계절차에 적용을 받는다.

V. 결 론

에티오피아는 기본적으로 연방법원과 주 법원, 도시지방법원으로 구별되며, 연방법원과 주 법원은 각각 최고법원, 고등법원, 1심법원을 두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연방법원이 상급법원이나, 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연방법원의 파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주 법으로 주 법원 자체적인 항소권한과 파기권한을 부여하므로, 실제 연방법원이 주 법원보다 상급법원이라고 명확히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헌법상 설치가 인정된 법원 외에도 사회법원과 도시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소송부담을 덜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종교/관습법원의 설치이다. 이것은 전통적 사법체계와 현대의 사법체계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헌법에서는 종교/관습법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상 이들의 설치를 적극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법원은 외압에 간섭받지 않으며, 재판관의 직무는 독립적으로 법률에 의하여만 규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단위가 작아질수록 독립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외에도 에티오피아 사법체계는 전문법조인력의 부족이나 법원 혹은 전통과 현대의 체계간의 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으나, 아직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선진법제의 수용과 다원적 법률체계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의 체계수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